##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2-236호

## 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처분결과 통지(공시송달)

보험업법 제86조, 제88조 및 제194조 등에 의하여 보험협회의 장을 통해 보험업법 제97조 등 위반자에 대한 처분결과(보험설계사, 보험대리점 업무정지 및 등록취소 등)를 당사자에게 통지하고자 하였으나,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통지가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2년 7월 12일 금융위원회위원장

## 1. 공시송달 대상자

성 명	주민번호/사업자번호	주 소	
이비에셋	140-**-	서울특별시 서초구	
보험대리점	140	시 할 ㅋ 할 시 시 의	
이덕현	620815-****	인천광역시 남동구	
김연숙	800207-****	전라북도 전주시	
문정희	690530-****	광주광역시 서구	
이경희	560506-****	서울특별시 은평구	
이종현	600307-****	전라북도 정읍시	
김선자	730619-****	경상남도 양산시	
박숙희	681230-****	광주광역시 북구	
박명희	680407-****	광주광역시 북구	
조성숙	630408-****	광주광역시 서구	
박은숙	620920-****	광주광역시 광산구	
차영선	860125-****	전라남도 화순군	
김동호	550305-****	경상남도 김해시	
강진숙	630812-****	부산광역시 영도구	
김태규	840508-****	경기도 안양시	

2. 서류의 명칭 : 보험업법 위반자 처분결과 통지

## 3. 서류의 내용 :

(1) 귀하의 보험업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처분이 결정되었습니다.

처분 대상	처분 원인	근거 법규	<b>처분 내용</b> (과태료 별도)
㈜이비에셋 보험대리점	1. 「보험업법」제98조에 따르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금품 등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여서는 아니됨에도  가. ㈜이비에셋 보험대리점(대표이사 이○○)은 2019.214~2019.12.30. 기간 중 ㈜○○○○○○보험 '○○○○○ 보험 '○○○○○ 보험 '○○○○○ 보험 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 송○○ 등 96명에게 카시트, 유모차, 상품권, 순금 등 총 22백만원 상당의 금품을 특별이익으로 제공한 사실이 있음	「보험업법」 제98조	등록취소 (2022.8.16.~)
이덕현	<ol> <li>「보험업법」제98조에 따르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금품 등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여서는 아니됨에도</li> <li>가. ㈜○○○○○○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이덕현은 2018.1.8.~2018.11.14. 기간 중 ○○○○보험㈜ '○○○○' 등 10건의 손해보험계약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 이○○등 10명에게 보험료를 대납하는 방법으로 총0.7백만원의 특별이익을 제공한 사실</li> </ol>	「보험업법」 제98조	업무정지 30일 (손해보험 신계약 모집업무에 한함) (2022.8.16.~2022.9.15.)
김연숙	2019.2.21.~2020.7.8. 기간 중 실제 명의인의 동의 없이 자동차 보험계약('○○○ ○○○ ○○○' 등) 13건을 모 집한 사실	「보험업법」 제86조 제2항	업무정지 30일 (손해보험 신계약 모집업무에 한함) (2022.8.16.~2022.9.15.)

처분 대상	처분 원인	근거 법규	<b>처분 내용</b> (과태료 별도)
문정희	2016.2.12.~2016.6.24. 기간 중 ○의원(광주 소재)에서 야간 당직을 전담하는 간호조무사로 근무하면서 문○○ 외 4인과 조직적으로 공모하여 허위 입원 환자들이 정상적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진료내역을 조작함으로써 130명의 피보험자들로 하여금 ○○○보험㈜ 등 16개 보험회사로부터 29,122만원의보험금을 편취하도록 한 사실이 있음	보험업법 제86조 제2항, 제102조의2, 제102조의3	등록취소 (2022.8.16.~)
이경희	2014.6.30.~2015.3.4. 기간 중 실제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브로커 엄○○으로부터 ○○한의원(서울 은평구 소재)의 허위의 입퇴원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방법으로 ○○○○보험㈜ 등 6개보험회사로부터 2,930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사실이 있음	제86조 제2항,	등록취소 (2022.8.16.~)
이종현	2016.12.21.~2017.6.5. 기간 중 실제로 입원이 필요하지 아니함에도 ○○한방병원(광주 소재)에서 좌측신경통을 동반한 요통 등의 병명으로 28일간 입원하여 입퇴원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방법으로○○○○보험㈜ 등 9개 보험회사로부터 866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사실이 있음	보험업법 제86조 제2항, 제102조의2, 제102조의3	등록취소 (2022.8.16.~)

처분 대상	처분 원인	근거 법규	<b>처분 내용</b> (과태료 별도)
김선자	2017.6월경 김○○과 공모한 후 2018.4.5. 실제로는 골절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음에도 ○○○영상의학과의원(부산 서구 소재)에서 천골 골절의 상해를 입은 것처럼 위조한 진단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방법으로 ○○○○보험㈜ 등 3개 보험회사로부터 골절진단비 등 549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사실이 있음	제86조 제2항, 제102조의2,	등록취소 (2022.8.16.~)
박숙희	2017.11.6.~2017.11.20. 기간 중 실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○○한방병원(광주 소재)에서 14일간 정상적인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의 입 원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방법으로 ○○○○○○ 보험㈜ 등 5개 보험회사로부터 443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사실이 있음	제86조 제2항, 제102조의2,	업무정지 180일 (2022.8.16.~2023.2.12.)
박명희	2018.1.10.~2018.1.23. 기간 중 실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○○○병원(광주 소재) 병원장인 박○○의 권유로 동 병원에서 14일간 정상적인 입원 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의 입퇴원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방법으로 ○○○○○○보험㈜ 등 4개 보험회 사로부터 304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사실이 있음	보험업법 제86조 제2항, 제102조의2, 제102조의3	업무정지 180일 (2022.8.16.~2023.2.12.)

처분 대상	처분 원인	근거 법규	<b>처분 내용</b> (과태료 별도)
조성숙	2017.8.8.~2017.8.21. 기간 중 실제로 입원이 필요하지 아니함에도 ○○○한방병원(광주 소재)에서 요통, 요추 부의 병명으로 14일간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 위의 입퇴원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방법으로 ○○○보험㈜ 등 4개 보험회사로부터 293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사실이 있음	보험업법 제86조 제2항, 제102조의2, 제102조의3	업무정지 180일 (2022.8.16.~2023.2.12.)
박은숙	2017.9.19.~2017.10.3. 기간 중 실제로 입원이 필요하지 아니함에도 ○○한방병원(광주 소재)에서 요추염좌, 경추염좌 등의 병명으로 15일간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의 입퇴원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방법으로 ○○○○보험㈜ 등 3개 보험회사로부터 265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사실이 있음	보험업법 제86조 제2항, 제102조의2, 제102조의3	업무정지 180일 (2022.8.16.~2023.2.12.)
차영선	2016.4.8.~2016.4.25. 기간 중 피보험자인 김〇〇 가 실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○의원 (광주 소재)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의 입원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방법으로 ○○○○보험 ㈜로부터 125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하도록 한 사실 이 있음	보험업법 제86조 제2항, 제102조의2, 제102조의3	업무정지 180일 (2022.8.16.~2023.2.12.)
김동호	2018.6.14.~2018.6.27. 기간 중 실제로는 도수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, ○○○○○○ 연합의원 (경남 김해시 소재)에서 2회의 도수치료를 받았다고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○○○○보험㈜로 부터 16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사실이 있음	보험업법 제86조 제2항, 제102조의2, 제102조의3	업무정지 90일 (2022.8.16.~2022.11.14.)

처분 대상	처분 원인	근거 법규	<b>처분 내용</b> (과태료 별도)
강진숙	1. 「보험업법」제98조에 따르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금품 등 특별이익을 제공 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여서는 아니됨에도  가. ○○○○○○○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강진숙은 2014.8.8. ㈜○○○○○○○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로 근무하면서 모집한 ○○○○○○보험㈜ '(무)○○ ○○○○○○○보험' 1건의 생명보험계약 모집과관련 하여 보험계약자 장○○에게 3회 보험료를 대납하는 방법 으로 총 1백만원의 특별이익을 제공한 사실	「보험업법」 제98조	업무정지 30일 (생명보험 신계약 모집업무에 한함) (2022.8.16.~2022.9.15.)
김태규	2016.4.15.~2017.1.20. 기간 중 모집한 '○○○○○ ○○○○○○○○○보험' 3건과 관련하여 보험료 3,193,500원을 대납하는 방법으로 보험계약자에게 특 별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	「보험업법」 제98조 제4호	업무정지 30일 (생명보험 신계약 모집업무에 한함) (2022.8.16.~2022.9.15.)

- (2) 본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동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이의신청을 청구할 수 있으며,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- 4. 처분내용과 관련된 문의는 금융위원회 보험과(02-2100-2965)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끝.